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좌　장 : **김삼섭** 중부대학교 교수

· 환영사 : **조승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대전유성구갑)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표① :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 발표② : **도경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 발표③ : **이명혜** 장애통합어린이집 학부모

· 발표④ : **김영란** 장애아동보육협회 회장

· 발표⑤ : **강명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발표⑥ : **이정욱**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

· 발표⑦ : **이은자**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발표⑧ : **김현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회

· 발표⑨ :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표⑩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 발표⑪ :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 발표⑫ :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 일부 참석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는다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좌　장 : **김삼섭** 중부대학교 교수

· 환영사 : **조승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대전유성구갑)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표① :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발표② : **도경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 발표③ : **이명혜** 장애통합어린이집 학부모

· 발표④ : **김영란** 장애아동보육협회 회장

· 발표⑤ : **강명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발표⑥ : **이정욱**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

· 발표⑦ : **이은자**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발표⑧ : **김현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회

· 발표⑨ :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표⑩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 발표⑪ :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 발표⑫ :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 일부 참석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

- 향후 개정방향 탐색을 위한 좌담회 -

1 목적

-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전면 개정된 지 10주년이 되었음
- 이 법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초중고,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만 3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차별금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지난 10년간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개요

제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 - 향후 개정방향 탐색

일시 : 2017.5.30.(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3 참석자

좌장 : 김삼섭 중부대학교 교수

환영사 : 조승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대전유성구갑)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표① :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발표② : 도경만 세종교육청 장학사
- 발표③ : 이명혜 장애통합어린이집 학부모
- 발표④ : 김영란 장애아동보육협회 회장
- 발표⑤ : 강명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발표⑥ : 이정욱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
- 발표⑦ : 이은자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발표⑧ : 김현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회 부회장
- 발표⑨ :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표⑩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 발표⑪ :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 발표⑫ :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 일부 참석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목 차

발표 1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1

발표 2 도경만 세종교육청 장학사 ····· 9

발표 3 이명혜 장애통합어린이집 학부모 ····· 27

발표 4 김영란 장애아동보육협회 회장 ····· 31

발표 5 강명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37

발표 6 이정욱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 ····· 41

발표 7 이은자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45

발표 8 김현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회 부회장 ····· 49

발표 9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53

발표 10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 61

발표 11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 65

발표 12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 71

발표 1

한경근(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1) 특수교육법의 목적은 타당한가?

◎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

- 사회통합의 책임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 있는가?
- 장애인을 사회의 현 상태에 적응 및 동화시켜야하는 것인가? 불평등과 편견은 아닌가?
- 사회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특수교육법으로 해결 가능한가?
 통합교육이 목적인가, 통합된 사회의 일원으로 배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의 배양이 목적인가?

2) 교육 기회는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 "장애인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

※ OECD '특수교육 대상자 '의 개념적 정의
1990년대: '장애아동'vs. '특수교육요구(Special Education Needs)' 아동
2000년대: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범주(Cross-national categories)

- o A(장애, disability): 교육적 요구는 일차적으로 감각, 운동, 신경학적 결함에 기인한 문제에서 발생
- o B(학습곤란, learning difficulty): 행동, 정서, 학습에서의 특정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
- o C(불리, disadvantage):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 및 언어적 요인이 학습에 불리함을 초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조건은 타당한가?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과 동일해야하는가? 차별화된 교육적 정의가 필요한가? '특별한 교육적 요구'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 장애아동을 찾는 시스템인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인가?
- 법적 장애를 갖지 않은 학생, '경도장애'학생, 장애 위험군 학생은 어디 있는가?

특수교육 대상자 순위	한국(2016)	미국(2013~2014, 3~21세)
1	지적장애(53.7%)	특정학습장애(35%)
2	지체장애(13%)	언어의사소통장애(20.6%)
3	자폐성장애(12%)	기타 건강장애(12.6%)
4	발달장애(5.6%)	자폐성장애(8.3%), 지적장애(6.6%)

3) 양질의 통합된 교육환경은 제공되고 있는가?

◎ 통합교육(일반학교 통합학급, 특수학급) 현장과 특수학교(재택 순회교육 포함) 이원화 구조가 타당한가?

- 일반학교 내 실질적인 통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통합학급, 특수학급으로 충분한가?)
-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는 잘 작동하는가?
-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교환경의 혁신 없이 통합교육은 가능한가?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vs 혹독한 성적 지향 학교 환경에 모든 학생을 적응시키는 책임)
- 특수학급을 기준으로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보장하는가?
- 특수학교, 재택순회교육 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이란?

◎ 재택순회학급 형태의 특수교육은 양질의 우수한 교육환경인가?

- 중도·중복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1990년대), 장애의 정도와 교육적 요구는 정비례한다면 질적인 기회 보장은 되고 있는가?
- 수업시수는 충분한가? 풍부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가?

2 특수교육 국가 책무성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1) 관련법들과의 관련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o 장애인차별금지법
 - 괴롭힘, 편의제공(특수교육법에서는 관련서비스?), 교육활동 참여 제한, 배제, 거부(특수교육법에서는 참여 배재)
o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전공과, 발달장애인법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개인별지원계획(특수교육법의 IEP, 발달장애인법의 개인별지원계획)
 - 발달재활서비스(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특수교육법의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과 교육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지도, 고용 등 연계
o 발달장애인법
 - 자기결정권 보장(특수교육법의 IEP, 진로직업교육에서 반영?)
o 장애인보조기기법
 - 보조기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지원센터)

2)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가?

◎ 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인프라

- 장애 영·유아지도 특수교사의 배치 및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 책임(국가 및 지자체)

◎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의 명문화 필요성은?
- 현재는 편의제공 위주로 지원을 한정하여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모호
- 고등교육 기관의 장애인 및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의 지원의 내용과 방식

◎ 장애인 평생교육

-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를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면 충분?
- 특수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책은?
- 장애영유아, 학령기, 고등교육 등 중등이후교육, 제도권 교육 이후의 평생교육에서 반영해야하는 특수교육 내용과 방법 등은?
- 생애주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vs. 장애인

◎ 전공과는 고등교육기관인가?

- 특수교육 서비스 연한 공식 연장?
- 0세~21세 또는 중등교육 이후 3년까지로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연한 명시 - 취학 유예와 면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의 제공 방안이 되어야함
- 의무교육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취학유예·면제 규정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엄격한 운용 방안 필요
- 근본적인 시각은 중등이후 제도권 교육이 필요한가로 보아야함
 ※ 미국 IDEA 18세 또는 21세로 규정하고 중등이후 교육(Post-secondary special education, PSE) 프로그램 제공
- 관련법과의 구체적인 연계는 무엇인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5조,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

3)특수교육의 질적 우수성 확보 방안은?

◎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사 전문성

- 통합교육 현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 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영역별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및 배치

o 특수학급교사(전일제 전담 특수학급 운영 교사)
o 통합교육 코디네이터(시간제한적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위험군 학생(At-risk)을 위한 일반교사 협력 교육)
o 전환교육 특수교사(진로직업교육, 지역사회 연계)
o 행동중재전문, 의사소통지원 전문 특수교사(발달장애인법)
※ 문재인 정부 공약: 장애 특성별 전문 교사 배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영역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학급별 교사 배치 기준의 피상적인 접근 탈피

◎ **특수교사의 질적 우수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미국 IDEIA의 highly qualified teachers)
- 특수교사 재교육, 양성과정, 일반교사와의 협력(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2008년, 2011년, 2015년)과 교육과정의 중점 변화에 따른 특수교사의 소양

· 2015 기본교육과정: 기능적 생활중심 --〉 기능적 학업 교육과정
· 통합교육 학생(특수학급 등): 공통 및 선택 교육과정 적합화

◎ **특수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특수교육교육과정에서 명시한 평가 지침으로 충분한가?
- 성과 지향적 특수교육 특성과 근거기반의 실제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 평가의 비현실성은 어떻게 개선하는가?
- 개별화교육계획과 실제 운영 교육과정과의 차이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평가의 내용, 방법, 환류 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 **특수교사의 교권 및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한가?
- 학생의 인권,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권의 조화 방안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CCTV 설치 발의안이 철회된 의미
- 특수교사의 전문 영역의 인정 방안은?

3 철학의 변화, 특수효과 당사자 요구와 학문적 성과의 반영은 어떻게 하는가?

1) 특수교육법에 용어나 개념의 오용은 없는가?

◎ ICF 모델을 반영하고 있는가?

- '재활', 의료적 모델에 기초
- '직업재활' → 직업교육, '재활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

◎ 관련 서비스 vs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의 개념
-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 특수교육과의 관련성,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성(예: 발달재활서비스)

2) 반영되어야하는 학문적 성과는 무엇인가?

◎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교육 지원 계획

-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개별화 전환교육계획(ITP), 행동지원계획(BIP), 긍정적 행동지원(PBS), 개인중심계획(PCP)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훈육(미국 IDEA 1997에서의 discipline)

3) 당사자 및 관련 기관의 요구는 반영하는가?

◎ 당사자의 요구

[더불어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 장애인 교육의 확대 및 장애 관련 연구의 지원
 - 교육기관 내 접근성 및 장애학생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실시
 -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 장애대학(원)생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온라인)에 대한 지원

◎ 학계, 교원양성기관, 관련 단체의 요구

[한국특수교육학회 19대 대선 공약 정책 제안]
· 장애보다는 특수교육 요구에 기초한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
· 특수교육 서비스 재공 연한 21세, 3년 확장
· 특수교사 법정 정원 100% 확보

· 모든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교사 배치
· 특수교사 인권보장

◎ 논의와 실행 감시의 주체

- 당사자주의 견지
- 교육의 사회적 책임 정신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시스템

발표 2

도경만(세종시교육청 장학사)

1 들어가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장애학생 입학거부 및 학습권, 교육권에서 차별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육에관한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나타났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은 '통합교육의 법제화', '개별화교육의 도입', '장애학생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절차적 권리 도입', '유치원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까지의 무상 · 의무교육' 등 교육기회의 확대 및 통합교육을 명시했다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의 양적측면의 보장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은 대부분의 조항들이 '~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법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부재, 다양한 장애 영역과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적 지원 부재, 생애주기별 교육기회의 불공정 등의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장애 당사자 및 학부모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함께 진행된 특수교육진흥법상 규정된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한 이행 촉구 활동들을 통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점들을 인식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법의 근본적 한계를 해소 하고자 하는 법제정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로 '장애인교육지원에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는 향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단초가 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법제화', '영아에서 전공과까지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법제화', '학급당 학생수의 법제화'와 함께 교육지원의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법에 제시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확장되지 못하였으며 새롭게 바뀌어진 정부에서 법안의 내용들이 책임있게 집행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법규정에 명시된 기본적 내용들에 있어서 정부의 집행의지 부족들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원고는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10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를 짚어보면서 이후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이 나아가야할 방향들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문

1)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16년도 시·도교육청별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

〈2016년도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 확보 현황〉

(단위 : 명, %)

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 확보율	미확보 정원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센터	합계		
서울	9,137	2,284	1,447	45	1,492	65.3	792
부산	4,918	1,230	913	25	938	76.3	292
대구	3,503	876	541	14	555	63.4	321
인천	4,763	1,191	713	19	732	61.5	459
광주	2,278	570	449	10	459	80.6	111
대전	2,767	692	434	11	445	64.3	247
울산	2,191	548	325	8	333	60.8	215
세종*	341	85	131	3	134	157.2*	-49
경기	16,560	4,140	2,129	60	2,189	52.9	1951
강원	2,674	669	596	22	618	92.4	51
충북	2,837	709	384	15	399	56.3	310
충남	3,834	959	694	23	717	74.8	242
전북	2,843	711	503	20	523	73.6	188
전남	2,982	746	504	24	528	70.8	218
경북	3,239	810	620	28	648	80.0	162
경남	5,554	1,389	850	28	878	63.2	511
제주	1,051	263	173	7	180	68.5	83
합계	71,472	17,868	11,406	362	11,768	65.9	6,100

출처: 교육부 (2016). 특수교사 정원 요구 자료. 미간행자료.

◎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 및 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치로 발생하는 문제점

- 특수교육의 질 저하
 - 정애 정도와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미비
 - 개별화교육의 어려움
 - 정규교사 학교 업무 과다

· 물리적 통합만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지원이 어려움

- 과밀학급으로 인한 문제 행동의 증가
- 과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짐
- 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성 부족

□ 개선 방안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로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

- 특수교사 특별충원 제도 도입

· 현재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추세로는 법정정원이 100% 확보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2016년 현재 65.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충원할 필요가 있음(특수교사 특별충원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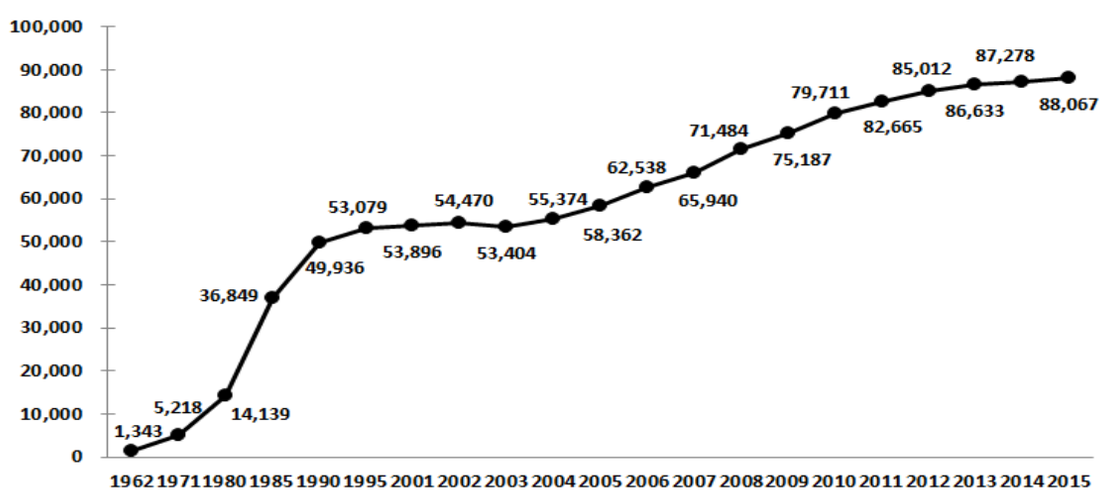
-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연 충족되기 어렵고, 국가 차원의 특수교사 수급 관리 계획 수립 필요

2) 특수교육기관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연도별 추이〉

출처: 교육부 (2016). 특수교육통계.

- 그림 Ⅲ-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역시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1)65,057명 → (’12)67,323명 → (’13)68,804명→ (’14)69,993명 → (’15)71,114명 → (’16)71,471명
- 2020년에는 지금보다 약 56,000명의 학생이 증가한 144,3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전병운 외, 2013)

◎ **’16년도 과밀 특수학교(급) 편성 현황**

- 학교 설립형태별 과밀학급 현황

〈학교 설립형태별 과밀학급 및 과밀학생 현황〉

(단위: 학급, 명)

구분		학급수 (A)	과밀학급수 (B)	과밀학생수	과밀학급 비율(%) (B/A)
국립	특수학교	175	18	36	10.3
	특수학급	46	7	11	15.2
공·사립	특수학교	4,358	769	1,605	17.6
	특수학급	10,009	1,517	2,569	15.2
계		14,588	2,311	4,221	15.8

출처: 교육부 (2016).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편성 현황. 미간행자료.

- 시도교육청과 국립학교의 과밀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편성 비율을 보면 15.8%로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학급) 769개(17.6%, 1,605명), 특수학급 1,517개(15.2%, 2,569명)이고, 국립학교는 특수학교(학급) 18개(10.3%, 36명), 특수학급 7개(15.2%, 11명)임.
-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순은 전공과과정(57.8%.324학급) , 유치원과정(25.9%로 231학급), 고등학교과정(23.5% 725학급), 중학교과정, 장애영아과정, 초등학교과정 순임.

○ **특수학교 신설의 어려움**

- 지역주민 반대로 신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없음

정책 개선 방안

○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칙(또

는 강제) 규정 신설

-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아닌 국가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의 주체를 교육감이 아닌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도별 특수교육기관 불균형 설치 문제 해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및 설비, 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필요한 곳에 특수학교 설치 확대**

-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미설치 시·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중점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중등과정 특수학교 학급의 과밀현상 방지 및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효과적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직업중점 특수학교(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설치·운영 권장
- 소규모 특수학교 시범 설치 및 확대 운영
 · 유,초,중,고,전공과 모두 설치된 대규모 특수학교보다는 지역사회 중심 내에 3학급부터 12학급까지의 소규모 형태로 특수학교 설치·운영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치료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 지원 기준 다르고, 발달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특수교육 보조인력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지원 기준 다름

◎ 2016년 시·도별 치료지원 대상 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치료지원 대상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47.7%인 41,933명임

-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77.9%로 가장 높고, 경기가 14.2%로 가장 낮으며 가장 많은 시·도와 기장 적은 시·도의 차이는 63.7%로 편차가 이주 큼. 이는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기준이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2016년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유급과 무급 모두 포함)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평균은 7.7명임. 시·도별로는 제주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4.6명이며,

경기가 가장 많은 11.1명임.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시·도의 차이는 6.5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지역별 편차가 큼.

◎ 2016년 시·도별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41.3%인 36,334명임

-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2.5%로 가장 높고, 인천이 20.2%로 가장 낮으며 이는 교통비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기준이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법에 명시된 지원이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음.
-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을 보면, 전남이 104만 7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1만원으로 가장 적음. 가장 많은 시·도와 기장 적은 시·도의 차이는 83만 7천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큼.

◎ 2016년 시·도별 특수학교 1인당 급식비 지원 지원액의 평균은 70만 3천원이며, 특수학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급식비 지원액이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도로 126만 6천원이고, 급식비 지원액이 가장 적은 시·도는 충남으로 47만 3천원임.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시·도의 차이는 79만 3천원으로 차이가 남

□ 개선 방안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장애아동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방안 마련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국가차원의 공통된 기준 수립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치료 영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치료지원 진단·평가 체계 마련

- 치료지원 제공 영역 확대 및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수립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지원센터 →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행동 문제에 대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보조인력 지원 확대

-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인력 업무 유형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 운영 방안〉

· 학교 배치형: 학사 일정 내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및 교내외 활동 지원에 한해 보조인력 지원 담당
· 학교 순회 지원형: 기존 특수교육보조원 이외에 별도의 보조인력 수요 발생 시 또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밖 활동시 보조인력 수요 발생 시 지원 담당
· 의사소통 지원형: 수화통역, 점역, 속기 등 시 · 청각 장애학생의 개인별 의사소통 지원 담당 → 명칭 변경 검토
· 통학 지원형: 통학 차량 운영 보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등 · 하교 통학 지원 담당
· 직업교육 · 훈련 지원형: 현장실습 또는 인턴제 참여 학생에 대한 보조 활동 지원 담당

출처: 정민호 외 (2016).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특수교사의 지원 요구에 기반한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 보조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 확대

· 보조인력의 유형, 경력, 배치 학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보조인력에 대한 표준 연수 과정(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보조인력 배치 확대 및 예산 지원

4) 통합교육 기반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통합학급 수는 51,520개, 통합학급 배치 학생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53.0%인 46,645명, 일반학급 배치 17.5%인 15,344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70.5%인 61,989명임

- 전체 통합학급 담당 교사는 총 51,520명임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1.1%인 580명임
-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통합학급 담당 교사는 50.1%인 25,809명임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학교에서 통합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그간의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효과성 연구 시행 권고(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45, 46, 2014년 9월 30일)

□ 개선 방안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
 - ·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사 배치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사회적 통합 실현
 -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배치 기준은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전담 교사 배치 확대
 - · 현재 694명(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강사 336명 포함)의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확대
- 통합학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수당 신설
 - ·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
 - · 통합학급 담당교사 수당 신설 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통합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TFT 구성
 - · 질 높은 통합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제공, 학생 대 교사 비율 감축,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합학급에서의 교재·교구, 수업자료 개발 및 편의 제공, 통합학급에서의 개별화교육계획 활성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준비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 계획 수립
 - · 특수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TFT 구성

5)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전공과 이수, 고등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는 9,482명이며 이중 진학자는 36.6%인 3,471명, 취업자는 28.2%인 1694명, 비진학·미취업자는 45.5%인 4,317명으로 비진학·미취업자를 위한 평생교육 등의 대책 필요함

◎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학, 취업, 미진학·미취업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취업자 비율이 과반이 넘는 50.5%였으나 2016년 24.4%로 줄어들었음

- 상대적으로 미진학·미취업자 비율은 2011년 27.1%였으나 2016년 40.6%로 늘어남

◎ 2016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전공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 9,403명 중 에서 취업한 학생은 1,639명으로 취업률은 27.6%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34.4%,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31.2%,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18.7%,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14.0%의 순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시·도별 및 직업군별 취업 현황

□ 개선 방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업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 학교 차원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 특수학교 진로지원 전담 교사 배치
-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에 따른 직업평가 실시

◎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특수학급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현장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 방식 혁신

◎ 교사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교사양성기관(사범계열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기 지원, 도우미 배치 확대 등을 통해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장애학생 진입 장벽 제거 방안 마련
- 직무지도원(직무지원인) 배치, 보조기기 제공 등 장애인 교사 임용 후 지원 대책

6)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중도·중복장애학생 증가

- 중증의 비율이 높은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지적장애 등은 증가하고, 중증의 비율이 낮은 시각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정서행동장애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중도·중복장애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특수학교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음- 특수학교의 중증장애 비율(1급 또는 2급)은 86.3%인데 반해, 특수학급은 58.0%, 일반학급은 39.5%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중증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정원 및 특수교사 배치 기준 등 기존의 특수교육 정책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

- 특히,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치료지원, 의료적 지원, 돌봄지원, 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추가 배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해외사례

일본의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 사례: 일본 특수학교 중에서(특히 지체장애) 병원 시설 또는 치료시설이 연계기관 형태로 함께 위치한 곳이 많음. 특수학교 내에 치료사를 배치하기보다 연계 의료기관에 있는 치료사 및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및 의료적 지원 실시. 뇌병변장애 아동의 관절 구축 및 변형 등 관련 수술적 처치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시설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의료적 요구가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특수학교 재학생은 국가에서 허용하는 치료시간에서 전문적인 물리치료 등을 해당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음.

□ 개선 방안

○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범위 규정 또는 개념 정의- 이에 기반하여 학급당 학생 수, 특수교사 배치 기준,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이 조정되어야 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국가 수준의 별도 교육과정 마련**

·기존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이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성인기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필요.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중심교육과정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재편 추진: 의사소통, 신체활동, 탐구, 여가활동, 진로활동, 자립생활 영역과 같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운영. 이를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기능적 생활중심의 별도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추진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 필요(더블카운트등)

◎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사 및 지원 인력 배치 기준 마련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3인이 넘지 않는 기준 마련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호흡, 배설, 섭식, 영양 관리 등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보건

전문 인력 배치 방안 마련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학교 내 특별한 영양 관리, 호흡 관리, 배설 관리 등 의료적 처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간호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적 케어 훈련을 받은 특수교사 배치. 일본 특별지원학교의 경우 현재 1,354명의 간호사와 3,493명의 의료적 케어 특별훈련을 받은 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7) 행 · 재정적 지원 체계

□ 현황 및 문제점

◎ 시 · 도교육청별 특수교육 담당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육, 진로 · 직업교육, 교육 복지 등과 연계한 특수교육과 존재(4개 시 ·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의 소속 부서가 다양하여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움

◎ 시 · 도교육청 규모에 비례하여 특수교육 담당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각 시 · 도교육청 재량에 의해 특수교육 담당 인력 배치. 이로 인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부산과 울산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특수교육 담당 부서의 특수교육 지원 인력 수는 울산이 더 많음.

◎ 시 군 구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비율이 68.9%**에 달하고 있음(자격소지 63명, 미소지 140명)

- 또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전문직의 전담 비율 역시 19.2%에 불과하고(특수교육전담 39명, 특수교육 및 기타업무겸임 164명), 이러한 현상은 도 단위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는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개선 방안

◎ 국가 차원 시 · 도 교육청 특수교육 행정 지원 조직 표준안 마련

-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수교육과 설치
- 특수교육과 설치 시 · 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장학관, 장학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지원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원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 · 도교육청에서 이행하도록 안내

◎ 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을 모두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고 팀 형태의 조직 구성 권장

-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정원을 추가 확보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업무 전담 독려 방안 마련

8)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 단위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한 교육청별 전달체제의 격차 심화

- 시·도 단위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치 법적근거 미비로 인하여 시도 단위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본청 전문직 겸임 형태로 운영 되어지고 있음
- 일부 시·도의 경우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충북-특수교육원 설치, 서울, 인천-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전남-전환지원센터 등 교육감의 역량에 따라서 별도 전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설기준, 전문인력 배치 기준 등 미비로 인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격차 심화

-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자격 미소지로 인해 서비스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현상 발생
- 치료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문화·예술·체육강사등 배치 인력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속성 어려움 존재

□ 개선 방안

◎ **광역 차원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시·도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립특수교육원(중앙특수교육지원센터) → 시·도특수교육원(또는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 →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로의 중앙 - 광역 - 기초 간의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완성
-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필수 인력(교육전문직, 파견교사, 관련서비스 지원 인력(치료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배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인적 자원 격차 해소
-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교육 또는 업무 매뉴얼 수립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시 · 도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 · 군 · 구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광역 차원의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업무 매뉴얼 보급 등 질 관리 지원 사업 실시

◎ 시 · 군 · 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역간 운영 격차 해소

- 시 · 군 · 구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 설비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시 · 군 · 구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지리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된 시설 · 설비 및 인적 자원 배치 기준 제시

- 시 · 군 · 구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 교육전문직 배치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

9) 특수교육 예산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육 총예산 현황

〈2016년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학생수	1인당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1,463,031,527	659,060,490	131,457,665	39,062,571	4,855,541	26,134,973	2,323,602,767	86,838	26,758
국립	특수학교	31,743,229	8,542,014	5,094,818	645,830	81,321	926,998	47,034,210	855	55,011
	특수학급	2,329,170	1,513,874	1,534,493	3,050	3,425	41,276	5,425,288	233	23,284
	소계	34,072,399	10,055,888	6,629,311	648,880	84,746	968,274	52,459,498	1,088	48,216
합계		**1,497,103,926**	**669,116,378**	**138,086,976**	**39,711,451**	**4,940,287**	**27,103,247**	**2,376,062,265**	87,926	27,023

* 국립학교 일반학급 배치 24명은 통계에서 제외된 것임

출처: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및 특수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 2016년 현재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2조 3,236억, 국립 특수학교 예산 470억, 국립 특수학급 예산 54억을 합하여 총 2조 3,760억원임
- 특수교육 예산(국립 포함)은 2조 3,760억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약 1,484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총 교육 예산 대비 4.6% 차지

-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학교 설립형태별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예산 확충 필요함

◎ **특수교육예산의 시·도간 편차 심화**

- 지역별 1인당 특수교육비 증가율의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을 통제하거나, 시·도교육청에 별도의 특수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법률 제정 추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2008년부터 특수교육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려워졌음.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특수교육 예산의 편차가 심함.
- 지역간 균형적 특수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특수교육 사업에 투입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직접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회계」법률 제정 등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계없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교육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시·도교육청 역시 시·도교육청 차원의 특수교육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회계 조례」제정과 같은 대책 마련 검토 필요

※ 예산 참조 법률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주요내용(2005정봉주외 32인 발의)

□ 법률안 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사업규모** : 2조 9,726억원

- 재원 :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수행 주체** : 시·도교육청

□ 연도별 특별회계 추정액

(단위:억원)

사 업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국세 추정액	1,108,232 (8.78%증)	1,205,230 (8.75%증)	1,315,352 (9.14%증)	1,429,052 (8.64%증)	1,547,901 (8.32%증)
특별회계 추정액(29,726)	4,987	5,424	5,919	6,430	6,966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2006	2007	2008	2009	2010
특수교육 환경개선 (22개 과제 추진)	29,726	5,167	8,329	7,232	4,743	4,255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억원)

순	사 업 명	소요 예산	예 산 내 역
1	특수학교 신축	4,000	20교*200억(1교)=4,000억 - 산출근거: 1교 200억(토지매입비 : 100억, 시설비·설계·감리100억)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	9,100	182개소*50억(1개소)=9,100억 - 산출근거:1개소 50억(토지매입비:25억, 시설설계감리25억)
3	장애인편의시설	7,624	7,624교*1억(1교)=7,624억 - 산출근거:1교 1억(승강기 6천만, 복도,출입구,화장실 4천만)
4	통합학급 교육환경 개선	3,124	20,825급*1천5백만(1급)=3,124억 - 산출근거:1교1천5백만(세면대, 책걸상, 창문, 교실 출입문 등)
5	중복장애학생용 특별 책걸상 제작	300	10,000명*3백만(1인)=300억 - 산출근거:1인3백만(지체부자유 5천명, 중복장애(시각,청각,정신 5천명의 특별 책걸상)
6	통합학급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833	20,825급*4백만(1인)=833억 - 산출근거:1급4백만(특수교육용 교재교구)
7	중등 특수학급 직업교육용 교재교구,기자재 구입	163	813교*2천만(1교)=163억 - 산출근거:1교2천만(작업기초기능 훈련용, 전환작업훈련장)
8	시각장애 특수학교 직업교육 기자재 구입	36	12교*3억(1교)=36억 - 산출근거:1교3억(이료교육용 기자재:측정기기,진단기기 등)
9	정신지체(정서)특수학교 직업교육 기자재 구입	97	97교*1억(1교)=97억 - 산출근거: 1교1억(작업기초기능 훈련기구 및 전환작업장 구비)
10	지체부자유 직업교육 기자재 구입	13	13교*1억=13억 - 산출근거:1교1억(작업기초기능 훈련기구 및 전환작업장 설비)
11	청각장애 직업교육 기자재 구입	18	18교*1억(1교)=18억 - 산출근거:1교1억(직업교육용 기자제 교체)
12	특수학급 증설비 지원	600	1,000급*6천만(1급)=600억 - 산출근거:1급6천만(1급 신축비 5천만, 교재교구구입 1천만)
13	특수학교 노후 버스 교체	100	100대*1억(1대)=100억 - 산출근거:1대1억(141교의 노후버스 100대, 대형버스)
14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및 미니버스	182	182대*1억(1개소)=182억 - 산출근거:1개소1억(진단평가 및 교구 6천, 미니버스(중형) 4천)
15	특수학교 비품 교체	141	141교*1억(1교)=141억 - 산출근거:1교1억(특수학교 비품중 사물함, 신발장, 책걸상 등 노후 비품 교체)

순	사 업 명	소요 예산	예 산 내 역
16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개발 보급	50	10억(1년)*5년=50억 - 산출근거: 개별화교육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10억, 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보급 40억)
17	장애학생 학습보조도구 개발 보급	50	10억(1년)*5년=50억 - 산출근거: 의사소통 등 장애보상, 경감, 보완 학습보조도구 개발 보급 50억)
18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546	182(교육청수)*5급(장애별)*6천만=546억 - 산출근거:1급6천만(1급 신축비 5천만, 교재교구구입 1천만)
19	병원 파견학급 설치	29	16(시도)*3급*6천만=29억 - 산출근거:1급6천만(1급 신축비 5천만, 교재교구구입 1천만)
20	성인 장애인 야간학교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지원	20	20개소*1억=20억 - 산출근거:1개소2억(교육용 비품 구입비 1억)
21	일반사립유치원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지원	1,700	8,500개원*2천만원=1,700억 - 산출근거: 1개원 3천(교재교구 5백만원, 교실 환경개선1천만, 편의시설 1천5백만)
22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1,000	100교*10억=1,000억 - 산출근거 1교10억(평균)(노후교실, 협소, 부족교실 신증축)
계		잘못된 계산식	

3 글을 맺으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 과정과 2006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의 과정에 있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법안 제, 개정의 주체가 특수교육 전문가 집단 중심에서 장애인교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교사와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 장애인 당사자단체등이 함께 참여하였다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보니 법안속에 담긴 세부적인 의미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는데 있어 예산과 인력 등과 관련해서 세부화 시키지 못하고 임의규정의 형태로 제시하였기에 이를 해석하는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17개 시도 지역별 편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지역에 따른 차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 영유아에서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 까지 장애인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지역간 편차를 넘어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발표 3

이명혜(장애통합어린이집 학부모)

1 특수교육 현안 문제 - 영유아 특수교육 분야

1) 현황 또는 문제점

○ 장애의 왜곡된 인식으로 조기발견 부재

- 사회인식: 장애의 범위를 신체적인 장애에만 축소시키는 경향
- 부모인식: 장애를 인정하기보다 회피하고자 함
- 교사인식: 아이의 예상되는 문제점(장애)을 부모에게 알릴 수 없음

○ 시스템의 부재

- 사교육 횡행
 - 비전문적인 치료실이 난무함 → 전문가의 부재,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 제도와 운영의 괴리
 -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제도 → 특수교육법 2조 6항, 7항
 - 보완되지 않는 제도의 사각지대 → 피해자는 장애아동

○ 보육현장에서 외면하는 특수교육 (비현실적인 통합교육)

-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의 전문성 부재
 - 형식적인 교사교육
 - 열악한 보육현장

2) 법률 개정 방향

○ 실제적인 조기발견

-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 개인차, 개성을 존중하는 통합사회 지향 →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언론 홍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각종 공모 활성화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

- 각 분야(아동발달, 특수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 구축
 - 발달문제를 보이는 아동 및 부모상담 실시
 - 아동발달평가 및 치료방향 설계, 부모교육 병행
 - 주기적인 관찰 및 장기적인 관리

- 법의 사각지대를 발굴,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보육현장의 변화**

- 통합교육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 특수교육은 유아교육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영역이 되어야 함
 - 실제적인 교사교육→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방법을 공유하는 연수 활성화, 보육교사의 역량 증진
 - 보육현장의 환경개선→ 불필요한 제도폐지, 1교사 담당 아동수 축소, 업무경감

발표 4

김영란(장애아동보육협회 회장)

1 현황

○ 2008~2014년도까지 장애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의무교육대상 현황

(취학유예아동도 포함)

구분	시설수	아동합계							
		정원	현원	장애아					비장애아
				종일반	방과후	합계	장애아/정원(%)	장애아/현원(%)	
2008	154	7.689	6,373	4,152	1,779	5,931	77.14	93.06	442
2009	162	8,062	6,649	4,257	1,824	6,081	75.43	91.46	568
2010	162	7,907	6,534	4,228	1,812	6,040	76.39	92.44	494
2011	165	8,037	6,596	4,242	1,818	6,060	75.40	91.87	536
2012	168	8,097	6,705	4,151	1,779	5,930	73.24	88.44	775
2013	170	8,202	6,736	4,091	1,753	5,844	71.25	86.76	892
2014	174	8,271	6,699	4,068	1,744	5,812	70.27	86.76	887

- 이 통계에 의하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약70%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의무교육대상임.

2 법률의 근거와 문제

가. 법률에 근거한 영유아교육

1) **제3조(의무교육 등)** : 유치원 과정은 의무, 만3세미만은 무상으로 하되, 취학의무를 면제 혹은 유예한 경우는 해당연수를 더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짐
2)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의 의무와 협조체계 구축
3)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
4)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을 보호자가 요구할 시에만 제공할 수 있음에 권고사항.(강제조항이 아님)

5)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보호자의 의무이고, 이는 일정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의 보육을 의무교육을 간주

- 법률에 근거한 장애영유아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유치원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유치원과 같이 "누리과정"이라는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면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과정을 실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 2항 제1호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 법률에 장소가 아닌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 이다.

>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 이로 인하여 의무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유아에 대한 지원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본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기관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을 추가하여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영유아 보육지원형태가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가족지원의 이중적 지원체제로서 바람직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였음을 알아야 함.
- 그러나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과정 중심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 법률을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내의 모순을 해결하고 일관성이 보장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준행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

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시행령에 근거한 영유아교육

1)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 2010~2012학년에 따른 단계적 실시방법의 명문화
2)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의무교육에 수요되는 비용의 범위규정(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강제규정,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는 권고규정)
3)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조기발견에 대한 상담/진단 및 평가에 대하여 실시하되 “보호자의 요청”시에 시행하고,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
5)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6)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7)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어린이집의 교육 요건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부가 의무교육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박약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 상향된 장애아보육환경(일반보육교사가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지 못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만이 보육을 하도록 강화)에 대한 법률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역시 보호자의 의무 조항에 들

어가 있으므로 인하여 국가의 책무조항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전국장애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는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당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영유아와 발달지체영유아 등 장애가 의심되는 위험군 아동에게 이르기까지 조기발견을 통한 보편적 교육제공을 하여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장소에 무관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법이 제정되고 의무교육일 시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장애유아의무교육이 “교육법 산하의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는가?” 라는 질문을 쉬지 않고 제기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에 대하여 법제19조 2항의 “의무교육간주”조항만을 제시하고 장애유아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왔고, 무시해왔다.

지금부터라도 “교육과정”중심의 의무교육으로 명시된 본법률 제3조를 준행하도록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배치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장애유아가 어디에 있든지 보편적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으로 이 땅의 장애유아가 장소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발표 5

강명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1 특수교육 현안 문제 - 특수교사분야

1) 통합교육지원교사

□ 현황 및 문제점

○ 특수학급교사는 학교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특수학급 수업

둘째. 통합교육 지원

셋째. 특수교육관련 업무

- 허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통합학급 지원'은 현실적으로 특수교사가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동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한 대처 방안이라면 특수교육 지원인력 분들이 가능하겠지만 교육과정을 조율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통합교육계획부분과 수업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통합을 위한 통합교육실천 부분에서는 현재의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실제적 통합교육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률 개정 방향

○ 통합교육 지원 교사가 필요합니다.

2) 학급 당 학생 수

□ 현황 또는 문제점

○ 특수학교의 학생이 중증화 되어 감에 따라 4,6,6,7의 학생 수로는 개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학생 수를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떨어진 규정입니다.

□ 법률 개정 방향

○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절이 필요합니다.

3) 중증중복장애

□ 현황 또는 문제점

○ 중증중복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중복학생이 누군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법률 개정 방향

○ 중증중복학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업무과중화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별도의 학부모회 운영, 방과후 업무 관련,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 업무등 특수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만큼 업무가 많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합니다. 그에 따라 경력있는 교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 저경력 교사 및 신규교사 배치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고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지원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 법률 개정 방향

○ 법률을 개정 할 시 특수교사들의 업무과중화의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학교업무가 정상화가 되어야 특수교육도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충원 및 운영방법 개선

발표 6

이정욱(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

1) 중도중복뇌병변장애 학생의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 중도중복뇌병변장애 학생의 의료적 서비스지원 확충
 (석션, 위로관 섭식, 유동식, 자가도뇨, 근골격계의 구축방지를 위한 자세유지 등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보건교사의 역량강화, 배치기준 강화)
- 교내 치료지원서비스 강화-치료와 교육을 교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국립지체한국우진학교의 모범사례)
- 지체특수학교의 중도중복장애 학급당 학생수 조정
 (4,5,5제,담임교사,협력교사,보조인력...)
- 교실 내 자세변환 공간 확보(신변처리를 위한 침대와 자세유지를 위한 보조기구들 셋팅. 웻지,다리 고정장치,롤,바디필로우 등등)
- 책걸상에 해당되는 휠체어와 자세보조용구,트레이 등의 개인별 맞춤 학습기자재 우선지원
-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개별화 교육 강화와 AAC의 기기와 접근성장치 보조기기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신변자립교육에 필요한 기저귀용품 지원
- 특장통학버스의 확보로 통학과 외부체험학습권 보장
- 1박 이상의 문화체험 학습에 보조인력 지원하여 학습권보장
- 지체특수학교 명칭과 장애영역이 상충되지 않는 문제점(명칭변경요청)

2)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양적·질적 보완

- 교원평가할 때 보조인력 평가도 추가
- 질적담보가 안된 현재의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의 교육보조활동에 대한 불만족,불신 등의 많은 문제점 내포.
- 대처방안 ;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병역 대체복무 특례 조항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보완
 (특수교육,사회복지,물리,작업치료학과,재활공학과 등)
 · 남자 : 4년 졸업후 국가고시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병역특례 2년을 3년으로 대체(3년 호봉인정, 보조원 정도의 급여 지급)
 · 여자 :졸업 후 국가고시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2년으로 보조인력 채용
 -〉 모든 학급에 배치함. 한반(같은학생들)을 3년동안 계속 맡아서 전문성 습득
 · 장애영역별 전문 소양갖출수있는 기회가 됨
 · 취업시 가산점 부여(일본에서 시행되는 현이 있음)

3) 중도·중복장애(최중증) 학생의 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생활기능동작훈련(ADL)에 필요한 신변처리능력 지도안,섭식 지도안, 의사소통지도안(AAC) 등의 IP제시
- 개별화교육을 위한 초기상담과 분기별 개별화 교육 진행과정에 대한 상담.
 학기말, 학년말 상담과 다음 학년으로 연계에 대한 상담
-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맞는 전환교육,직업교육 연구개발
- 전공과 과정에서 직업과 연계가 어려운 최증증장애 학생들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적응 훈련

발표 7

이은자(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안 - 발달장애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 이 제정되고 시행 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법과는 다르게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주축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특수교사 등이 직접 주도하여 제정된 법으로써 정책 대상자들의 의지가 들어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법은 장애영아에서부터 성인장애인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원의 확대배치 및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실질적인 운영, 진로직업 교육 강화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오는 괴리감을 떨쳐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법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과 현재 특수교육법 안에서의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특수교육법 제 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설치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규정도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특수학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역에서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 이때에 강제로 규정해 놓지도 않은 법은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 대부분에서는 타 지역의 장애학생까지 수용해야 하는 형편으로 특수교육법으로 규정해놓은 한 학급당 학생정원수를 지키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의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이 아닌 보호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학급의 설치도 현재 교육감이 관할 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해 놓아 교육감 혹은 관할 교육기관장(교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 유무가 결정되는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완전통합, 특수학급, 특수학교로의 다양한 교육환경의 기회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맞는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설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특수교육법 제 22조 개별화교육 1항을 살펴보면 각 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개별화교육 계획과 그에 따른 교육환경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 뿐인, 형식적인 행정절차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평가서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산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교원 평가 제도처럼 개별화교육지원에 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특수교육법 제 27조 ③항에 근거하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확보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사의 부족은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운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장애학생의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질적 교육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적 환경이 함께 제공 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넷째, 특수교육법 제 26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③항에서는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예산부족의 이유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자질의 문제, 특수교육대상자 이해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에 대한 보조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밖에도 장애조기발견 무상지원, 특수교사와 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자질향상 지원 등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전 생애 영역의 교육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이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소망합니다.

발표 8

김현주(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회 부회장)

1 특수교육 현안 문제

1) 현황 또는 문제점

○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비롯한 시행령 및 규칙의 통합교육에 관련한 조문(21조)에 실제적으로 통합 학급을 운영할 때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할 수 있는 한 학급당 최대한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에 대한 제한조항 및 특수교육대상자 1인 배치 시 학급 정원수 감원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일부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경기도의 소규모학교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 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여러 명이 배치되어 일반통합교사의 학급 운영이 어렵고, 비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비롯한 장애아동의 교육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일반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시 개별적 학교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적용을 하겠다는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일괄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보완이 필요함.

○ **보조 인력 제공에 관한 문제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3항)을 비롯한 시행령(25조) 및 시행규칙(5조)에서 보조 인력의 제공 및 연수·교육, 역할·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건비 문제로 인해 보조 인력의 수급이 동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의 인건비 지급을 거부,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조 인력의 유지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대안책으로 공익요원의 증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법령의 보조 인력에 관한 내용의 추가적 보완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급운영을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배치 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2) 법률 개정 방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 통합교육에 관한 조문에 4항으로 교육감은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편성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1인에 한하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 배치 시 학급 정원 수 10%를 감하여 편성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 27조 제 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학생 3명마다 1명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발표 9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7년….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연구해야 할 때.

대학 내 장애인 학생의 문제는 1960년대 말 연세대에 최초로 장애인- 강영우박사-이 입학하면서 존재는 하지만 인식은 되지 않는 有存在, 無認識 문제였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소아마비를 중심의 지체 장애인 학생 수적 팽창으로 암묵적 제도권 편입이 가능해져 많은 장애인들이 입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대학 장애인 입학 거부가 늘 신문에 올랐고 이에 1990년대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이 제도는 장애인 학생들이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외라는 특별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평등과 참여 정신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현재 이런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되어 장애인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동기가 다소 저하되고 대학 구성원들의 간의 자원 배분에 있어(장학금과 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의 법적 소송과 장애학생 복지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대학 교육은 개인의 인간 승리의 이야기에서, 대학과 국가 고민해야 하는 구체적인 제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제도화는 장애인의 대학 교육의 문제가 더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장애인을 위한 입학전형이나 기회보장으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학 중에 장애가 발현되거나 장애를 입는 학생들도 제도적으로 대학에서 지원하고 책임지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장애인학생의 대학 진입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형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전형으로 보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대학 진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생입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하는 유일한 입학전형이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서 -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전까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을 하는 특별한 전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의 한 종류로 인식한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학에서의 장애인 문제는 진입 장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존립과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투자 요소가 되어 장애인 학생의 교육 책임과 투자가 '일반화'되는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학진입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고 고민해야 한다.

또한 첨언하자면 장애인의 대학 진입이 일반화되려면 대학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어야만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사교육도 포함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장애인 차량의 LPG 보조금 지원 철폐가 논의 되기 시작했듯이.

■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의 대학 진입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일.

일반 전형에서 장애인의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제일 먼저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고3학교 교실 현장에서 장애인의 대학 진입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장애인학생을 위해 공식적인 대학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진학상담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것뿐이며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비영리단체는 아직까지 필자가 일하는 단체가 한국에서 유일하다. 특히 특수교사 조차 없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이거나 특수교사가 있더라도 특수학급에 입급을 안한 완전 통합의 학생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별 전형이나 수능 시험에서의 지원 사항 등을 전혀 모르는 등 정보의 사각 지대에 놓이기 쉽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장애학생복지평가에서 공약한 장애학생 대학입시 정보 웹사이트는 매년 약속되는 정책이건만 10년째 깜깜 무소식이며, 장애인학생이 통합된 일반 학교 고3 진학지도 선생님들은 여전히 장애인과 관련된 특별전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직무연수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 흔하디흔한 입시 매뉴얼 설명회도 없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은 스스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그마저도 올해 초 갑작스레 폐쇄되어 버려 7년간 축적된 정보가 사라져서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크게 당황했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제일 먼저 입시에 관련해서 문의하는 곳이 해당 지역 교육청인데 문제는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 장학사조차 장애인 학생을 위한 대학 입시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함께걸음 지난호 참조)

이런 문제는 해당 교육청의 장학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실무자와 대학,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 조차도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와 정의'를 다르게 생각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거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는 자신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당사자들도 이러할진대 일반학교의 진학지도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경우 이런 비전문성은 더욱 심각하다. 덧붙여 이제 대학에서는 장애인학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입학 관리처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장애인입학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배양해야만 선의를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이 차별이 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정체성을 논의가 필요하다.**

각 대학의 2013년도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 그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유형특성상 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완전 통합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응시 자체를 막는 일이 벌어진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들이 악의가 있다기보다 제도상, 행정상의 허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교육청조차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대부분 대입을 준비하는 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고 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과거 관례를 따랐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장차법 등을 어기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형이 없는 대학들은 일반 전형에서는 아예 입학을 허가 하지 않는다고 오해 하거나 그 전형에서 뽑는 장애 유형만 입학을 허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들도 언론부터부터 특별 전형을 이용하여 자신에 입맛에 맞는 장애인만 선발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장애인 대학 진입에 대한 막연하고 전근대적인 공포를 이제 버리고 현 법률 체계에 철학에 맞게 능력이 있어 객관적으로 입학을 허락한 장애인에게 대학 문호를 완전 개방하고 - **일반전형 입시 요강에 모든 장애인의 응시에 있어 법에 의거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를 한시적으로 실어 주는 것도 방법 - 중복이나 증증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 전형을 운영하는 것**, 그 명칭 역시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분명히 하고 그 대상 범위도 꼭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대학의 별도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가이드 라인안에서. (다문화 가정의 장애인 학생이나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 했던 희귀질환 학생의 경우)

각 대학들도 사전에 장애인학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연합해서 개최하고 정확한 기준과 학업 능력을 제시 한다면 대학 당국도 능력과 성취 동기가 미리 준비된 장애인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과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지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학 당국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회 확대라는 일차원적인 고민 보다는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학력과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교수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인구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싫든 좋든 장애인의 교육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대학의 발전과 존립에 의문과 위기를 제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 스스로 지적·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을 교육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하고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연구해야할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일반전형에서의 장애인의 대학 진입을 완성하려면 학부생 이후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지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 노력하고 지원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진입 이전의 차별이나 학부생 이후 과정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면 장애인의 대학 진입의 일반화는 요원할 것이다. 모든 대학이 어느 대학처럼 장애인 천국이라 불리는 대학이나 장애특성화 대학이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명문 대학이 명문인 것이 학생들에게 안락하거나 편의 제공을 잘해서 명문 인 것은 아니다. 단지 장애 때문에 불가능 했던 것들을 대학들은 그 고유의 연구와 관점으로 가능한 기회와 과정을 제공하면 의지와 노력으로 명문이 되어 가는 것이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장애인학생지원센터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

1. 공유 소스로 누구나 공유하고 생산 활용할 수 있는 리눅스 체제의 장애인학생지원 체계를 만들라, (오픈형 장애인학생지원체계 만들기)

1)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라 .

ex) 교내 도우미 교육은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유형별 복지관을 활용하고 취업 교육은 경력 개발실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하고 센터의 운영에 장애인학생 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하여 장애인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다만 장애인당사자는 불쌍하거나 연민을 일으키는 불쌍한 장애인 되기를 부정하므로 장애인대학생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일류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에서 인간 승리 요구나 사랑과 배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여학생들과 국제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랑과 배려를 최고의 덕목으로 요구하지 않지 않은가? 장애인학생지원센터는 지역의 전문인과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이를 조정하며 장애인학생 당사자들이 역량이 강화되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센터에 제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장애인 학생 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라.

ex) 학교나 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학생들을 모집에도 실제적으로 장애인학생들의 참여가 높지 않아 실무자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장애에 대한 ‘낙인 효과’와 장애인학생지원센터가 장애인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센터는 이러한 낙인 효과를 자부심으로 세우고 장애인학생지원센터가 최소한 여학생처나 학생 상담실과 같이 장애인학생들에게 독립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인학생들간의 멘토와 멘토링을 강화하고 센터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학생들의 인턴, 조교, 근로 장학생 등으로 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이 전문성과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장애인학생의 지원과 차별 금지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감수성과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규칙을 만들고 교육을 강화하라.

ex) 가장 간단하게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과제이다. 교내 학칙이나 규칙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인권위원회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성차별, 성추행 금지처럼 자세하고 철저하게 교육하고, 따를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의도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학교구성원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3. 장애인학생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표현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소통하라,

실무자들이 장애인학생당사자를 이해시킨다고 더 노력하라고 말하거나 예산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로 연결되거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 장애인학생 관련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그 부족분을 채워 갈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중장기적으로 밝히는게 좋다. 장애인학생들의 즉자적인 요구를 장애인학생지원센터는 적절하게 리더쉽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게 중요하다.

4. 장애인학생에게 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만들어 주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 시켜라 ,

장애인학생에게 무조건 안락하거나 편리한 대학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센터의 의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 대학에 자부심을 갖고 그들의 자아 실현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게 중요하다. 장애인학생들이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학습 도우미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5. 단순한 배려 차원의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하라.

헬렌켈러가 세계 최초로 대학에 들어간지 100여 년 스티븐 호킹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루게

릭병을 가진 채 교수가 된지 40 여년이 지났다. 그들이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완벽한 편의 시설이나 안락함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위대한 장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학생으로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을 뿐이다. 참고로 그들이 다닌 대학들은 다들 100여 년이 넘어 편의시설 등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등이 많았다. 다만 그들 대학들은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대학들의 한계를 밝히고 그러나 장애인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메인에 밟히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최우선 문제 해결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발표 10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장애인평생교육의 문제 및 해결방향

❍ 중학교 이하 학력이 56.6%인 장애인의 학력실태

- 장애인의 학력 수준은 국민교육수준에 비해 낮아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필요(장애인 실태조사, 2014)
- (국민교육수준) 중졸이하 18.0% ('12, 통계청)
- (장애인 학력수준) 중졸이하 약 56.6%, 무학 11.6% ('14, 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학력이라는 심각한 학력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예산 부족

- 2009년 교육부가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6년까지 8년간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은 25억여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에 특수교육예산이 8,303억여원 증액된 것에 비해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2016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특수교육비는 27,016천원이지만, 장애인 1인당 연간 평균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은 1,780원에 불과함.

※ 참고자료

〈표 1〉 연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2009 (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	B-A	연평균 증가액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C)	1,863	2,772	3,076	4,274	3,571	2,926	3,699	4,435	2,572	367
특수교육 예산	1,545,753	1,667,641	1,966,284	2,138,496	2,245,781	2,153,125	2,227,638	2,376,062	830,309	118,615
전체 교육 예산 (D)	38,698,867	38,595,975	41,618,722	45,752,654	49,643,947	49,986,533	50,325,564	**51,225,455**	12,526,588	1,789,512
전체 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율 (C/D)×100	0.005%	0.007%	0.007%	0.009%	0.007%	0.006%	0.007%	0.009%		

자료 : 교육부(2009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 **학교졸업이후 교육지원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 실태**

- 지적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학력보완교육 0.9%, 문해교육 1.3%, 직업교육 5%, 인문교양교육 1%, 문화체육예술교육 0.9%, 시민참여교육 0% (’14, 보건복지부)
- 자폐성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학력보완교육 4.2%, 문해교육 0%, 직업교육 11.3%, 인문교양교육 2.5%, 문화체육예술교육 15.7%, 시민참여교육 0% (’14, 보건복지부)
-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 학교졸업 이후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위와 같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정부 및 지자체의 부처 간 책임회피로 인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지원기준과 발전계획의 부재로 정체**

- 장애인 교육문제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고 장애인평생교육 또한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왔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시·도별로 지원되기 시작함.
- 그러나 지자체별로 시·도가 지원할 것 인지 교육청이 지원할 것인지 부처 간의 책임회피와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예산지원기준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였고 정책 및 예산부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학교졸업이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체계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
-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을 2009년에 발표하며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성인장애인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은 모두 지방의 자율에 맡김으로서 ‘특수교육법’제정 취지와 달리 장애인평생교육분야는 더딘 발전 속에 답보하여왔음.
- 이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또한 정책 및 예산수립이 필요하였으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의 부재로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노력으로 2016년 ‘평생교육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가 마련됨.

발표 11

한용구(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1 특수교육의 현안문제 - 최중증발달장애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2017년도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계획이 마무리하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여기에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 체계안에서 주류화되고, 일반 평생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유일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나 규정등을 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한 관련기관의 검토 끝에 5월30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평생교육시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건립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금번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세가지 유형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타지역사회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시행될 예정인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첫째,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준이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소규모로 규정되어 자칫 최중증발달장애인 이용자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유형 구분으로 자칫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축소되고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만 일임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된다.

셋째, 시행령에서는 아직도 운영지원과 지도 감독의 주체가 누구이고 정확히 장애인시설인지? 교육시설인지?에 해당되는 평생교육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이전되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 인력 및 프로그램 등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외연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현장 실무자로서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서울시에만 구청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설립 평생교육센터 포함해서 6개의 센터가 있고, 2017년 하반기에 3개소의 센터를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건립하는 등 서울시 전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 경기, 인천, 대던, 대구, 포항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의 조례와 금번 시행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안 이외에는 아직 어떠한 세부기준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도 매뉴얼조차 없는 형편이다.

2) 법률개정방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개정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는 현재로서는 큰 관련은 없어보인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거 센터가 설립되었고 금번 시행령안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시설이라고 명기되어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상의 관련성을 떠나 몇가지는 큰 그림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안에 담아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학교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기록이 상당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들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현재의 이용자현황이 차이가 클 때가 있으며 더욱 학령기가 끝난지 오래될 경우 최근의 이용장애인을 탐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령기에 생활기록부에서부터 학령기이후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관련 기록을 일원화하여 관리하여 평생교육의 계획과 실행과 평가 전단계에 있어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둘째,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부에서는 평생교육센터에 활동보조인이 투입되는 것을 이중지원이라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그 동안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던게 현실이라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라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이며 평생교육도 교육의 일환이라면 적어도 학령기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소요되는 예산과 같지는 않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평생교육기관에 의지해야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는 학령기에 준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

발표 12

김은숙(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MEMO

MEMO

MEMO

MEMO